

# 2007년 조사연구사업 하반기 공모 세부계획(안)

2007. 6. 29.

## **【순 서】**

### **I. 사업목적과 추진방향**

### **II. 사업추진근거**

### **III. 사업내용**

#### **1. 사업 개요**

#### **2. 사업지원 대상**

#### **3. 사업 유형**

#### **4. 사업지원 방법**

#### **5. 사업 심사·선정**

#### **6. 사업 평가·성과관리시스템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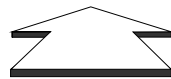
## 2007년 조사연구사업 하반기 공모 세부계획(안)

<07. 6. 29. 금, 연구센터>

### I. 사업목적과 추진방향

#### 【사업목적】

- ◇ 방송의 공공성·공익성 실현과 방송산업 활성화, 시청자복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송인프라 조성



#### 【추진방향】

- ◇ 공모제 정착 및 내실화
  -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로 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
- ◇ 지정과제 규모 확대
  - 정책 밀착형 과제 개발로 정책 활용도 제고
- ◇ 지원금 상한액 증액
  - 연구비 등 현실화로 내실 있는 연구 기대

### II. 사업추진근거

- ◇ 방송법 제27조 제1호 (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)
- ◇ 방송법 제27조 제5호 (방송에 관한 연구·조사 및 지원)
- ◇ 방송법 제38조 (기금의 용도)

### III. 사업내용

#### 1. 사업 개요

##### 가. 사업 목적

- 방송의 공공성·공익성 실현과 방송산업 활성화, 시청자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송 인프라 조성

##### 나. 하반기 공모사업 예산규모 : 3억7,800만원

◇ 2007년 조사연구·조사연구관련사업 예산편성(안)

예산편성		사업분야		조사연구사업(R&D)		조사연구관련사업 (저술·세미나)
		총 예산	48억2,500만원	위원회 직접	보조사업	보조사업
용역비/사업비	43억7,000만원	16억5,000만원	18억원	9억2,000만원		
경비	4억5,500만원	3억6,125만원		9,375만원		

※ 세부사업별 편성예산은 지원사업 심사선정시 조정 가능함

##### 다. 연구비 산출기준

◇ 2007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인건비 단가

책임연구원	연구원	연구보조원	보조원
2,469,786원	1,893,797원	1,265,941원	949,489원

#### 2. 사업지원 대상

##### 가. 조사연구사업 신청자격 (상반기와 동일)

- 위원회의 조사연구사업 유관분야 비영리 기관·단체
  - 기관·단체 설립 목적이 조사연구사업 지원 취지·목적에 부합하거나 전년도에 관련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·단체
- 위원회의 조사연구사업 유관분야 연구자 및 기타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개인
  - 전년도에 조사연구사업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

#### 나. 제한사항

- 방송발전기금 타 유관사업지원 분야 수혜 기관·단체
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·단체의 사업(리서치, 회계관련 등 특수분야는 예외)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확정되었거나 지원 예정사업
- 동일인이 동일 기간 내에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책임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. 단, 연구자 풀이 적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.
- 공모 직전년도 사업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책임연구원에 한해서 2년간 방송위원회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(2008년부터 적용예정).
- 공모 직전년도 사업 평가점수 평균 70점 미만은 책임연구원에 한해서 1년간 방송위원회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(2008년부터 적용예정).

### 3. 사업 유형

#### 가. 위원회 자체 조사연구 사업

- 직접수행 :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소속 연구위원 또는 해당부서가 직접 수행
- 공동수행 :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소속 연구위원들과 외부 연구진이 공동 수행

#### 나. 개별 조사연구 지원

- 지정과제 : 방송위원회가 과제명과 예산을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(RFP제시)
- 자유과제 :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연구자가 연구과제나 예산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응모하도록 한 방식 (하반기 공모는 없음)

## 4. 사업지원 방법

### 가. 기본방침

- 개별 조사연구지원 사업은 공모제 대상이며, ‘정책과제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선정됨
- 단체별·지역별 균형 지원을 고려함
- 1개 기관·단체별 사업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
- 기관·단체별 균형지원을 위해 동일 기관·단체 당 최고 지원한도액은 잔여예산 총액의 20%를 넘을 수 없으며, 단위 사업(과제)당 최고 지원금은 6,000만원 이하로 제한함.
- 하반기 공모 후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 사업을 실시하며, 내부결재로 진행함

### 나. 지원원칙과 조건

- 연구자 및 과제선정 방식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, 수의계약에 따라 과제를 선정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(신고)하여야 함
- 사업수행은 1차에 한해 제3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. 다만, 연구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서 타당성이 인정받아야 함
-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방송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결과물의 이용시 위원회와 협의함
- 지원계획서상에 기재되었던 사업내용 임의변경 불가
- 사업비는 자부담과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함

### 다. 수행계획서·중간·결과보고서 제출

-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조사 사업수행계획(안), 연구내용, 일정, 예산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- 전체 사업일정 중 반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중간보고서를 제출(추후 별도 공지)해야 함
- 조사연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#### 라. 조사연구사업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청구

- 다음 각호의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취소가 결정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. 또한, 지급취소가 결정된 지원금 중 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
  - ①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
  - ② 지원대상 기관단체개인이 조사연구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
  - ③ 지원대상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
  -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는 경우 또는 지원금을 조사연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#### 마. 지원금 교부
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금은 사업 선정 직후(1차) 50%, 중간보고서 접수·검토 이후(2차) 50% 분할 교부함(보조사업에 한함).

### 5. 사업 심사선정

#### 가. 기본방침

- 객관적 평가시스템 확보 : 평가항목 계량화
- 직전년도 사업수행 평가 결과 당해년도 사업선정시 반영(환류시스템)
  - ※ 2006년 사업수행 평가결과는 2007년 사업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

#### 나. 정책과제심의위원회/정책과제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

- 방송위원회 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, 회계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정책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
- 조사연구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간시점과 종료시점의 수행 성과를 각각 평가함. 이를 위해 정책·산업·기술 각 부문별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30인 내외의 정책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
- 정책과제심의위원회, 정책과제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(표 참조)

■ 조사연구사업 : 정책과제심의위원회 / 정책과제평가위원회 구성(안)

	정책과제심의위원회	정책과제평가위원회
위원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인</li> <li>- 내부 3 : 방송위원 1(위원장), 연구센터장 1, 연구위원 1</li> <li>- 외부 4 : 회계사 1, 각분야별(정책/산업/기술) 1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0인 내외</li> <li>- 3개 부문 : 정책·산업·기술</li> <li>- 각 부문별 평가위원 10인 내외 구성</li> <li>- 지정과제의 경우 당해과제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</li> <li>※ 부문별 인원은 과제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</li> </ul>
위촉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년간 (연임 가능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년간(단,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), 연임가능</li> </ul>
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회의 3~5회/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책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추천</li> </ul>
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심의</li> <li>○ 정책과제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동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</li> <li>○ 최종 지원대상·지원액 위원회에 건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간평가</li> <li>○ 사업수행 결과평가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기지원 결과 잔액발생시 추가지원 실시</li> <li>○ 공모사업 선정심사 담당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모사업 중간·결과평가 담당</li> </ul>
피추천인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학회에서 추천</li> <li>○ 관련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</li> <li>○ 해당과제 지원자(응모자) 배제</li> <li>○ 조사연구 사업계획심사 유경험자</li> <li>○ 연구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에 따라 정책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추천</li> <li>○ 관련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</li> <li>○ 해당과제 지원자(응모자) 배제</li> <li>○ 조사연구과제 평가관련 유경험자</li> <li>○ 연구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</li> </ul>

※ 기획예산처 지침 : 심의위원회/평가위원회 이원화 운영, 과제별로 평가위원 3인이 평가함. 중간평가 의무화

## 6. 사업평가성과관리 시스템 강화

### 가. 사업선정 심사항목(측정지표) : 7개 항목(14개 지표)

- 연구과제의 독창성(연구주제·방법의 독창성)
-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(연구내용의 적절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)

- 연구수행능력(연구실적·능력)
- 연구비·연구기간의 적정성(연구비·연구기간)
- 정책업무와의 연계성(정책실효성·현장 활용도)
- 연구의 공적기여도(사회적 파급효과·공공복리 증진효과)
- 연구의 시의성(현실이슈 반영·사회적 공감대)

#### 나. 중간평가

- 연구목표의 달성도 : 수행계획서상 연구목표 대비 달성정도
- 연구결과물의 내용적 충실도 : 연구자료의 수집과 분석 충실도
- 정책방향과의 상호 연계성 : 위원회 정책방향과의 연계정도
- 예산 집행의 적정성 : 예산기준이나 수행계획서상 계획 대비 합치성

#### 다. 결과평가

- 연구목표의 달성도 : 수행계획서상 연구목표 대비 달성정도
-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: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
- 연구결과물의 내용적 충실도 : 연구자료의 수집과 분석충실도
- 연구결과의 활용성 : 연구결과물의 활용도, 예상되는 기대효과
- 예산집행의 적정성 : 예산기준 및 수행계획서상 합치성

#### 라. 사업평가의 활용

##### 1) 당해년도 평가점수 5단계 구분

- 우수 100~90, 양호 89~80, 보통 79~70, 미흡 69~60 매우미흡 59점 이하
- 2006년 평가결과는 2007년 사업 선정시 '참고자료'로 활용

##### 2) 제한규정 강화

-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책임연구원에 한해서 2년간 방송위원회 조사 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- 평가점수 평균 70점 미만은 책임연구원에 한해서 1년간 방송위원회 조사 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
※ 상기 내용의 시행 시기는 2007년에 고지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계획임.

- 동일인이 동일 기간 내에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책임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. 단, 연구자 풀이 적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(2007년부터 적용).



◇ 조사연구(사업선정 심사항목)

평가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	가중치 (지정)	가중치 (자유)	A(100)	B(80)	C(60)	D(40)	E(20)	점수(가중치 *평가)
연구과제의 독창성	연구주제 독창성	·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가 ·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창출하는가	5%	10%						
	연구방법 독창성	·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(도구)을 시도하는가 ·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는가								
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	연구내용 적절성	· 연구내용이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·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· 기존 연구성과를 계승, 심화시키는 것인가	15%	15%						
	연구방법 타당성	·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·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								
연구수행 능력	연구실적	·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	20%	20%						
	연구능력	·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· 참여 연구진의 역할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· 기관/단체의 연구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적절한가*								
연구비 연구기간의 적정성	연구비의 적정성	·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규모가 적정한가 · 연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가	10%	10%						
	연구기간의 적정성	· 연구목표 대비 연구기간이 적정한가								
정책업무와 의 연계성	정책 실효성	·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· 관련 정책의 방향(비전)을 제시하고 있는가	30%	20%						
	현장 활용도	·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어느정도 활용가능한가								
연구의 공적기여도	사회적 파급효과	· 후속 연구 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· 관련된 사회적 담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	15%	15%						
	공공복리 증진효과	· 시청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가 ·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가								
연구의 시의성	현실 이슈 반영	· 연구주제가 현실적 이슈를 어느정도 반영하는가	5%	10%						
	사회적 공감대	· 연구주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어느정도 반영하는가								
계			100%	100%	총점					

◇ 조사연구(중간평가 항목)

평가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	가중치(지정)	가중치(자유)
연구목표의 달성도	목표대비 달성도	· 수행계획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· 중간연구성과를 보았을때 수행계획서 일정상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는가	30%	30%
연구결과물의 내용적 충실도	독창성·전문성	· 다른 연구결과와 달리 독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·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려 시도하고 있는가 ·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은 어떠하며 그런 전문성이 중간 결과물에 잘 나타나 있는가 · 연구진이 의도하는 바가 중간결과물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가	20%	30%
정책방향과의 상호 연계성	수행과정의 정책적 연계성	· 연구과정에서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췄는가	30%	20%
	중간 결과물의 정책적 연계성	· 연구 중간결과가 방송위원회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		
예산집행의 적정성	예산기준과의 합치성	· 예산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사용했는가	20%	20%
	수행계획서상 계획대비 합치성	· 수행계획서상의 예산계획 대로 사용했는가		
계			100%	100%

◇ 조사연구(결과평가 항목)

평가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	가중치(지정)	가중치(자유)
연구목표의 달성도	목표대비 달성도	· 수행계획서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·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했는가	20%	20%
연구결과물의 내용적 충실도	독창성·전문성	· 다른 연구결과와 달리 독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가 ·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려 시도했는가 ·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은 어떠하며 그런 전문성이 최종 결과물에 잘 나타나 있는가 · 연구진이 의도하는 바가 최종결과물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가	20%	30%
정책방향과의 상호 연계성	수행과정의 정책적 연계성	· 연구과정에서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췄는가	30%	20%
	최종 결과물의 정책적 연계성	· 연구 결과가 방송위원회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		
연구결과물의 활용성	연구결과물의 활용도	·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· 예상되는 기대효과	15%	15%
예산집행의 적정성	예산기준과의 합치성	· 예산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사용했는가	15%	15%
	수행계획서상 계획대비 합치성	· 수행계획서상의 예산계획 대로 사용했는가		
계			100%	100%